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6. 27.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6월 2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6. 6.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갑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민간 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 연임횟수를 규정하여 체육진흥기금운영의 투명성 유지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안 제8조제2항)
- 위원의 연임횟수 (안 제8조제4항)
- 립장명칭 변경 (안 제8조제7항, 안 제1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정 (2005.12.28) 당시부터 규정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조항을 그대로 조례에 기재하고, 그 밖에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및 위원회 간사(팀장)명칭 변경 등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임.
-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을 참여토록 하는 것은 기금 운용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도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문호개방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에는 ‘시행령’ 에 따라 이미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¹⁾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하여 조례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입법체제나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명)

계	공무원	구의원	민간인
7	3	1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42 호
----------	---------

제출연월일 : 2016.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민간 전문가 참여를 규정하고 연임횟수를 규정하여 체육진흥기금운영의 투명성 유지 및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규정
- 나. 위원의 연임횟수 규정
- 다. 팀장명칭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사항
 - 1) 규제심사 : 심사실시(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6.4.28 ~ 2016.5.18,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중 “생활체육담당팀장”을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생활체육담당팀장”을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p> <p>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생 략)</p> <p>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u>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⑤ ~ ⑥ (생 략)</p> <p>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u>생활체육 담당팀장</u>이 한다</p> <p>제12조(기금관리공무원)</p> <p>① (생 략)</p> <p>② 기금운용관은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u>생활체육담당팀장</u>이 된다.</p>	<p>제8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하되, 위원 중 <u>3분의 1이상은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1회에 한하여 연임</u>----- -----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u>기금담당 팀장</u>-----.</p> <p>제12조(기금관리공무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기금담당팀장</u>----- -----.</p>